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22일

기 흥 구 정 장



1. 공고제목 : 불법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
2. 공고기간 : 2019. 1. 22. ~ 2019. 2. 12.
3. 대상자

대상자	법인번호 (사업자번호)	주소	납부기한	과태료(원)	비고 (반송사유)
(주)남*이*씨	110111-64*****	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**	~2019. 2. 12	66,250,000	폐문부재

### 4. 공고내용

- 가. 귀 사에서 게시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였으나,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019. 2. 12.(화)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또한,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(3%) 및 매 1개월마다 증가 산금이 가산되며, 지방세 체납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 불이익 처분(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 등)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아울러,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시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기타 문의사항 : 용인시 기흥구청 생활민원과 광고물관리팀 (☎031-324-6503)